

# 화재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87** 학년도 대학입시 학력고사를 20여일 앞둔 지난해 10월 26일, 일요일인 이날도 3백여명의 입시생들이 나와 마지막 단계에 이를 수험준비로 여념이 없던 대전시 동구 인동소재 대입전문 효성학원에 화재가 발생했다.

## ● 화재발생 및 조치

이날 학원건물 2층 교무실에서 근무중이던 학원관계자들은 오후 1시 6분경 한 학생이 급히 뛰어 들어오며 1층에서 연기가 난다고 알려와 불이 난것을 알게됐다. 연락을 받은 학원관계자가 곧 1층으로 내려가보니 건물 서쪽 외곽의 생맥주집이 이미 화염에 휩싸인 채 불길의 전진으로 옮겨붙고 있었다.

당시 근무중이던 학원관계직원

5명은 즉시 119에 신고한 뒤 각 강의실에서 자습중이던 학생들에게 육성으로 화재발생을 알리고 주계단과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토록 유도했으나 뒤늦게 불이 난것을 알게된 일부 학생들이 연기가 자욱한 중앙계단을 이용하지 못해 2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는등 피난로를 잃고 혼란을 빚는 사이 약간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학원측과 인근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의 본격적인 진화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물내부의 합판으로된 간막이, 천정, 책상등에 순간적으로 확산돼 건물 안쪽 창고에 쌓여있던 섬유류, 솜등을 태우며 1, 2층 학원내부를 전소시키고 화재발생 2시간후인 오후 3시경에야 완전히 진화됐다. 이 화재로 학생 13명이 화상을 입

었고 치료중 1명이 사망했다. 화재원인과 발화지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계속 조사중에 있다.

## ● 건물개요

대전시 동구 인동 11-1에 자리잡은 효성학원건물은 지난 71년 대영상가변영희 김 태진씨의 27인 공동명의로 건축된 집합건물(소유권이 나누어진 복합용도의 건물)로 지난 81년 현소유자 김 炫씨가 건물 대부분을 인수했다. 金씨는 종전에 운영되고 있던 고입전문학원을 2백평가량 확장, 운영해오다가 86년 1월 부터는 대입전문학원으로 인가받아 현재 약 9백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대학입시 준비를 하고 있다.

건물 1층 외곽은 모두 점포로 대부분 개인소유이며 1층 내부일부와 2층전체가 학원으로 사용되어왔다.

## ● 방화관리 및 피해복구

효성학원 金 炫원장은 평소 시멘트에 불연재인 석고텍스로 내장한 학원건물에 탈 것이 뒤있겠느냐고 화재위험을 과소 평가해왔으나 실제로 화재를 겪고보니 불이 나면 유리건 쇠건 안타는 것 없이 다 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털어놓았다. 다만 방화관

리의 기본을 인명 안전에 두고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강조해 온 까닭에 직원들이 자체 진화작업을 포기하고 학생들 대피에 주력했던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술회장은 특히 이번 화재에서 불이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치게하고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닫고 건물을 새로 고치면서 가장 유념한 것은 대피시설이었다고 한다. 수용인원 1천명이 동시에 피난가능토록 복도를 넓히고 복도 양쪽에 대피장소를 만들어 십사리 비상구로 나갈 수 있게 했다.

소방시설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규정이상으로 시설하고 내장재도 천정은 경량철골로, 간막이는 주로 콘크리트와 불연재를 사용하고 미진한 부분은 불연성 페인트로 보완했다.

## ● 복구 후

술회장은 이 화재로 보험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었다고 한다. 화재전까지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낭비로만 생각되어 왔으나 사고 뒷처리할 하면서 이보험이 유사사에는 자기자신 뿐아니라 남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사고를 당하면 당사자는 어떠한 외롭고 괴로운 법이거든요. 금전적인 도움도 큰 것이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심리적인 위안이 대단한 것이었지요. 피해학생들의 부모들도 치료비 지급문제에 학원을 신뢰해 주었고 병원에서도 보험환자로 별 문제없이 우선적으로 치료해주었지요. 서로 신뢰하니 일처리가 모든 면에서 수월했지요. 저

로서는 보상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만족입니다. 또 협회의 일처리가 상당히 깔끔한 것도 인상적이었지요.』라고 보험이 물심양면의 도움이 되었다면서 『처음에는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고 주위에서 묻기에 보험 안들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만한 대비도 없었느냐고 나무라는 거예요. 명색이 사업한다는 사람이 체계도 없이 일하고 있었던 것같아 굉장히 망신스러웠죠. 뒤에 보험에 가입된 것이 알려지자 체면은 겨우 회복됐는데 그 체면값만해도 웬만한 사업하는 사람이면 술한잔 안먹고 보험들어둘만 하다고 생각했지요. 앞으로는 사설강습소협회 충남지방장으로서 회의있을 때마다 미가입된 학원에는 가입을 권할 생각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지요.』라고 보험의 가치를 체면값과 비교하며 재미있는 보험지지를 펴기도 한다.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특수건물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가 사회보장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화재사고를 겪으며 충분히 깨닫게 된 것이다.

효성학원은 지난 86년 3월 25일부터 1년기간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보험금액 3억3천7백80만원으로 가입돼 있었으며 협회는 사고후 신속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거쳐 86년 12월 12일 1억5천2백7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한편 사망자 1명을 포함한 화상피해자 13명에 대해서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법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별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수건물 소유주로서 술회장은

소방관련 문제에 대해 『소방기구 판매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우선 불량품이 너무 많고 판매후의 서비스가 전혀 없어요. 최소한 일정기간 동안의 불량품 교환이나 고장수리는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또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기준이 기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서 골치 아쁩니다. 건물소유주로서는 10년전 법도 법이고 지금 법도 법이지요. 설치당시 법대로 한 것이면 그것은 어느정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시설이 노후됐거나 내용연한이 지난것도 아닌데 그저 기준미달이니 바꾸라고 한다면 소유주가 동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지적사항 자체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소방관계 법령에 대한 건물소유주의 이해부족도 있겠지만 소방행정자체가 객관적인 신뢰도를 잃게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건물소유주들의 공동된 의견인 법령의 잦은 개정이나 기준적용상의 문제점등은 여러각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화재사고에서는 인근 주민이며 행인, 학원에서 무료 수강중이던 수녀등 많은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 학생들의 대피를 도왔고 화재후에는 3천여만원의 성금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사업을 통해 얻은 것은 마땅히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생각아래 대전지역 노인들을 위한 효도관광실시(연 2백50회정도 비용일체 제공), 야학운양 영세민 사내에 대한 대입검정고시과장 무료 강좌실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사회사업을 벌여온 술회장의 개인적 노력과도 무관하지 않을성 싶다.☞